

『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6년 1월 11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1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1월 18일

제1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웅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보완·정리하고,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무쏘, 픽업, 코란도, 밴 등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면제대상차량에 포함하여 감면을 유지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 적재면적이 2㎡미만인 화물자동차(무쏘, 픽업, 코란도, 밴 등)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 감면혜택 부여

-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 신설로 별도감면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감면규정 삭제함
-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“토지 및 건축물” 을 “토지·지상건축물·주택”으로 함
- 유통산업지원 감면 중 터미널 용지가 분리과세로 전환됨에 따라, “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” 를 “창고용에”로 변경함
-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한 조특법 제121조의2의 제1항 제2호의 5, 6, 7목의 규정이 추가됨에 따른 조문 추가
- 지방세법상 법인의 지방이전감면 중 대상재산의 취득 및 등기 기한을 '05. 12. 31에서 규정기한을 삭제함에 따라 감면 형평성을 위하여 시세감면조례도 기한을 폐지함.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세법
- 자동차관리법
- 경상북도 재정과-22445(2005.12. 7)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 일부를 보완 정리하고
-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2006.1.1부터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된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며
-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,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추가 수정됨에 따른 조문정비 등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